

# 상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1. 07. 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실험동물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로서 교육·학술연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권한, 의무)

1. 위원회는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조사하고, 종료된 실험에 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받는다.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 및 승인된 동물실험계획 내용의 준수(PAM)에 대한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모든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총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방법, 심의평가 기준 등)** ①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신규, 재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 구매 및 반입은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이루어져야 한다.

②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④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9.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1.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2. 그 밖의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평가·의결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방법에 의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본교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